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납부금 인상 및 법률 명시〉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5.
3. 회 부 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6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 ----- ----- ----- ----- <u>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u> ----- ----- -----.
<신설>	1. <u>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때:</u> <u>2만원</u>
<신설>	2. <u>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할 때:</u> <u>1천원</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관광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임.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공항 출국 시 7천원, 항만 출국 시 1천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²⁾

한편, 현행법 제246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로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와 재원을 규정하면서, 제주자치도 내 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동 기금의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³⁾

1997년 제도 도입 당시 공항 출국납부금은 1만원이었으나,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항분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1) 출국자의 해외 소비로 인한 관광수지 악화 및 관광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정책적 목적 아래 1997년부터 부과되어 왔음.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재원 기반이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약 1,300억원 수준의 기금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원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⁵⁾

또한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가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손쉽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4) 한라일보, “정부 출국납부금 인하… 제주관광진흥기금 ‘불똥’”, 2024.4.17.

https://m.ihalla.com/article.php?aid=1713357881756309073&page=89#_PA

뉴스1, ““국민 세금을 왜 外人 관광객에게”…출국납부금 현실화 한목소리”, 2025.11.4.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5964534>

5)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14.), p. 140

○조계원 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총선을 2주 앞두고 포퓰리즘 감세정책을 펼쳤지요. 그러면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재원이 손실된 건 알고 계시지요?

(중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9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사이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서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처럼 해외에서 출국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려는 위원님 노력은 매우 형평에 맞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할 거고요.

적정 수준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1만 원으로 유지돼 왔던 것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또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저는 1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2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액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무래도 국민에 부담을 드리는 부담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논리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7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상승률을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100.8%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다른 선진국 싱가포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더 올리고 해야 되지만 평균, 아까 2만 9000원 말씀하셨지만 또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높고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2만 원 정도는 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금액을 공항 2만원, 항만 1천원(항만분은 현행과 동일)으로 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재량에 따라 금액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줄이고, 납부자의 부담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관광진흥개발기금⁶⁾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출국 시점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관광·항공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다수 국가에서 항공여객세·출국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수단이며,

우리나라 출국납부금이 1997년 도입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최근에 오히려 인하된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금액 인상을 통해 관광재정을 내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현행과 같이 일정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출국납부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금액 및 부과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2024년 시행령 개정과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국회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는 개정 취지는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⁷⁾

6)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55호)가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임.

7) 「부담금관리 기본법」

반면,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다수 부담금이 비율·산식 또는 상·하한을 법률에 두고 구체적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⁸⁾ 출국납부금 징수액(기금 수입액)은 경제·관광 여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을 법률에 고정할 경우 당국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목적과 성격, 재원 확보의 안정성, 경제·관광 여건의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법률에 정액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출국납부금 제도는 「관광기금법」에 의해 기본적인 체계가 먼저 정립된 이후, 「제주특별법」이 그에 대한 지역적 특례로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규율하는 구조이므로, 금액·면제범위 등 제도의 실질적 사항에 관한 심사는 일반법인 「관광기금법」 개정 방향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55호)⁹⁾의 심사 경과와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8) 「아동수당법」은 수당액을 법률에 정액으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내용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률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나, 출국납부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제적 형평성, 해외사례, 물가상승률,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¹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제2조제3항 중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때: 2만원
2.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할 때: 1천원

- 10) 국제적 형평성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평균 출국세 29,000원,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출국세 33,400원(출국세를 운영하는 24개국 한정 52,900원)
해외사례 : 일본은 국제관광여행세를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26.7월 시행 예정)
물가상승률 : 제도 도입 이후('97→'24)의 물가상승률 100.4%